Ⅲ. 해외의 보험그룹 감독체계

1. 그룹감독에 관한 국제기준

가. 공동포럼(Joint Forum)의 금융그룹감독원칙

■ 공동포럼은 1999년 자본의 과다계상과 리스크집중 방지, 감독자 간 협력을 금융그룹의 감독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음.[37)]

○ 자본의 과다계상(excessive gearing)을 포착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평가

○ 리스크 집중과 내부거래 통제와 재무건전성 관리

○ 금융그룹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적격성 심사

○ 감독자 간 정보 교환과 협력 촉진

■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권역 간 규제의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제고에 따라 공동포럼은 여러 금융권역 및 국가에서 영업 중인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향상 방안을 2010년 보고서[38)]에 담음.

○ 금융그룹의 경제적 영향력,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사업모형,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, 그룹 내 비규제회사의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금융그룹 감독은 기존의 전통적 감독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.

○ 금융권역 간 사업모형의 근본적 차이점 및 이에 기인한 감독의 차이[39)]가

37) Joint Forum(1999).

38) Joint Forum(2010).

존재하지만, 각 금융권역의 동일 기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있어서 일관성과 투명성의 향상이 필요함.

- 금융그룹 차원의 행위와 위험을 포착할 수 있는 그룹단위의 금융감독을 시행함.
- 금융권역 간 규제의 차이를 해소하여 규제차익(regulatory arbitrage)의 가능성을 최소화함.

■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공동포럼은 2011년에 1999년의 원칙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금융그룹감독원칙[40]을 권고함.

○ 여기서 금융그룹이란 은행, 증권, 보험 중 최소 2개 부문에 걸쳐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공통의 지배 아래 있는 금융기업들의 그룹으로 정의함.

○ 그룹감독은 개별 금융기업의 감독과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함.

○ 새 원칙은 금융권역 간 활동으로 인한 규제의 차이와 복잡성에 따른 규제차익의 가능성 및 이의 완화방안을 제시함.

- 금융산업의 변화와 특수목적회사 및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에 초점을 맞춰 자본적정성, 위험집중, 내부거래에 관한 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.
- 또한 임원 등의 적격성 원칙 적용범위를 보다 넓혀서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포괄해야 한다고 권고함.

■ 금융그룹감독원칙은 금융그룹감독을 크게 감독자의 권한, 감독자의 책임, 지배구조,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, 리스크관리의 5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제시함(〈표 Ⅲ-1〉 참조).

○ (감독자의 권한) 효과적인 그룹감독을 위해서 감독자에게 그룹감독에 필요한 권한과 수단을 부여하는 명확한 법적 틀이 필요함.

---

39) 예를 들어, 은행이나 금융투자에는 없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준비금의 평가 및 이에 대한 감독은 보험에서는 핵심적 개념임.

40) Joint Forum(2011).

〈표 Ⅲ-1〉 공동포럼의 금융그룹감독원칙

구분	금융그룹 감독 원칙
감독자의 권한	1. 포괄적 그룹감독; 2. 협력과 정보교환; 3. 독립성과 책임 명시; 4. 감독자원
감독자의 책임	5. 그룹감독자; 6. 감독자 간 협력; 7. 건전성 기준과 범위; 8. 감시 및 감독; 9. 감독수단과 강제
기업지배구조	10. 금융그룹의 지배구조; 11. 금융그룹의 구조; 12. 임원 등의 적격성; 13. 지주회사 이사회 책임; 14. 보수
자본적정성	15. 자본적정성 요구; 16. 그룹의 자본적정성평가; 17. 자본의 이중계상 고려; 18. 과도한 레버리지 고려; 19. 내부 거래 고려
유동성	20. 지주회사 유동성 고려
리스크관리	21. 독립성, 포괄성, 효과성; 22. 리스크관리문화; 23. 리스크허용한도; 24. 신사업의 위험평가; 25. 아웃소싱; 26. 리스크상황분석; 27. 리스크통합; 28. 리스크집중 및 내부거래; 29. 부외거래

자료: Joint Forum(2011).

- 또한 그룹감독에는 비규제기업의 리스크와 관련된 정보접근과 필요시 시정조치권을 포함해야 함.

○ (감독자의 책임) 감독자 간 조정, 협력 및 정보교환과 이를 촉진하고 조정할 그룹감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함.

○ (지배구조) 금융그룹의 경영 및 지배와 관련된 임원 등의 적격성과 지배구조의 범위를 그룹단위로 확대함.

○ (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) 그룹 전반의 리스크에 주목하여 비규제기업의 활동을 포함한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함.

- 적절한 내부통제의 제약 아래 건전한 의사결정, 위기상황분석을 반영하는 자본평가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.
- 평시와 위기상황에서 모든 단계의 자금조달을 반영하는 금융그룹의 유동성 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감독지침을 제시함.

○ (리스크관리) 그룹단위 리스크집중과 내부거래의 관리 및 보고를 위한 효과적 시스템과 절차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함.

- 비규제 관련회사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 리스크에 대한 금융그룹의 측정, 관리 및 보고능력을 강조함.

■ 한편, 금융그룹 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회사들에 주목하고, 관련 감독자들 사이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함.

○ 금융그룹 내의 비규제회사 또는 금융그룹이 속한 상위 비규제지주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과 검사권에 주목함.

- 비규제회사에는 사업 또는 순수지주회사, 모회사 또는 자회사, 특수목적회사가 있을 수 있음.
- 비규제회사의 특성이나 금융그룹에 미칠 영향을 그룹단위에서 평가함.

○ 여러 금융권역의 감독자들 간 조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진 그룹감독자의 명시, 분명하고 투명한 감독절차, 권역별 감독의 차이를 해소해 줄 효과적인 장치를 전제로 원칙을 적용함.

나. IAIS의 보험그룹 감독방식

■ IAIS는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을 크게 보험핵심원칙(ICPs) 중 그룹단위감독에 관한 원칙,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(ComFrame),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(SⅡs)의 선정 및 감독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접근함.

○ 2011년 개정된 보험핵심원칙을 통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험그룹감독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음.

- ICP23 그룹단위감독(Group-wide Supervision)
- ICP25 감독 협력 및 협조(Superviso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)

○ 201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(IAIGs)에 대한 국제적이고 공통되는 감독기준 성격의 공통감독체계(ComFrame) 마련을 위해 작업 중임.

○ 금융안정위원회(FSB)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(SⅡs)에 대한 선정기준 및 규제방안을 마련함.[41)]

– IAIS는 2012년 5월에 선정기준, 10월에 규제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마침.

〈그림 Ⅲ-1〉 보험그룹 형태에 따른 IAIS의 감독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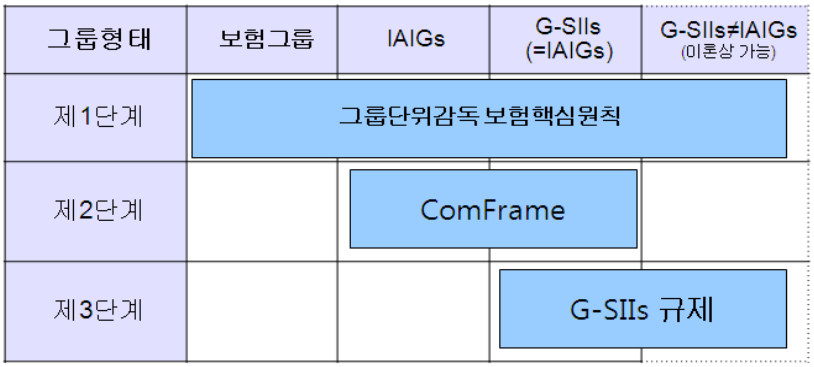

자료: IAIS(2012.7).

1) 그룹단위감독 관련 보험핵심원칙(ICPs)

가) 보험핵심원칙 제23장 그룹단위감독

■ IAIS는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유지를 그룹감독의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감독에 있어 회사단위와 그룹단위감독을 함께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(ICP 23).

○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 및 금융권역 자회사를 포함한 관련 회사 감독자들과 협력하여 그룹단위감독의 대상이 되는 보험그룹의 범위를 획정함(ICP 23.1).

– 보험회사와 그룹 내 회사들은 그룹단위감독을 받게 될 그룹 범위의 획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감독자에 제공하여야 하고, 감독자는 이들 정

41) 금융위기 이후 보험그룹의 시스템리스크 관련 논의는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나, 관심있는 독자는 임준환 · 유진아 · 이경아(2012)를 참조하기 바람.

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.

- 그룹 감독자들은 규제감독의 사각 및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단위감독의 범위에 관하여 사안별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동의해야 함.

○ 그룹단위감독의 목적상 보험그룹으로 획정되는 그룹은 모든 관련회사를 포함해야 하며, 회사의 연관성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(ICP 23.2).

- 영업 및 비영업지주회사(중간지주회사 포함)
- 보험회사(자매 보험회사 또는 자보험회사)
- 은행 및 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권역의 회사
- 비규제회사(모회사, 자회사,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)
- 특수목적회사(special purpose entities)

○ 또한 보험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그룹의 범위를 획정함.

- 상호 연관성(Interconnectedness)
- 리스크 노출 정도(Risk Exposure)
- 리스크 집중도(Risk Concentration)
- 리스크 전이(Risk Transfer)
- 그룹 내 거래 및 노출 정도(Intra-group Transactions and Exposure)

○ 감독자의 법적권한 또는 감독권 부족으로 획정된 보험그룹 범위를 축소하지 않으며, 그룹감독 목적상의 범위는 그룹구조, 영업활동 또는 거시경제 환경 등 그룹 내 · 외의 변화에 맞추어 신축성을 가짐(ICP 23.3, 23.4).

- 감독자는 보험그룹 범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.
- 또한 감독자는 그룹감독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투명한 보험그룹 구조를 갖도록 요구해야 함(ICP23.5).

■ 보험핵심원칙은 특히 그룹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효율

적인 그룹단위 감독체계(GSF: Group-wide Supervision Framework)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(ICP 23.6).

○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수립은 그룹단위감독의 범위, 효과적 감독을 위한 선결조건, 보험그룹의 특성, 규모, 복잡성에 따른 감독체계의 적용, 이행 과정에서의 피드백 및 그룹단위감독의 궁극적 목표를 고려해야 함.

-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범위는 국가 및 권역 간 규제차익과 감독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모든 관련회사와 리스크를 고려하여 설정함.
- 그룹감독의 선결조건으로 감독자의 감독권, 법적권한 등이 갖추어지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.
- 감독체계의 설계와 이행 간에는 시장 및 그룹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여 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반복적 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함.
- 그룹감독의 궁극적 목표는 보험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구축은 규제의 불필요한 중복, 사각 또는 부담을 줄이면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안정성을 유지함.

○ 또한 그룹단위 감독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이고 기능적 접근법을 취하며 그룹단위감독의 관점에서 보험감독을 이해하는 수단임.

- 선결요건, 그룹단위규제요건, 그리고 그룹단위감독 검토 및 보고의 3단계로 구성됨.
- 그룹단위 감독체계는 IAIS의 보험감독체계에 기반하여 감독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음.

■ 그룹단위규제요건(Group-wide regulator requirements)은 개별회사감독에 대한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개별회사감독요건을 확대하거나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추가적 사항을 포함(ICP 23.7).

〈그림 Ⅲ-2〉 IAIS 그룹감독체계(GSF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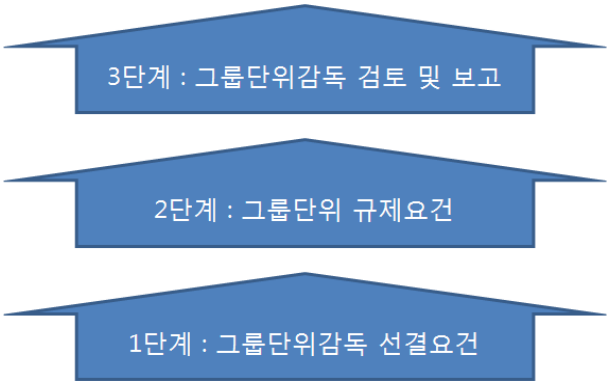

자료: IAIS, ICP 23 그룹단위감독 〈그림 23.3〉.

○ 개별회사감독요건의 확대적용
  – 지급여력평가(그룹단위 지급여력)
  – 지배구조,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(그룹단위 지배구조)
  – 영업행위(그룹단위 영업행위)

○ 그룹단위감독 관련요건
  – 그룹 구조의 복잡성
  – 국경 간/금융권역 간 이슈
  – 개별회사감독과의 상호작용
  – 비규제회사

■ 보험그룹이 그룹단위규제요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의 검토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(ICP 23.8) 감독자들에게 현장검사와 상시감독을 통한 그룹감독 평가권한을 부여해야 함.

○ 그룹단위 감독체계는 그룹단위의 리스크를 식별하고, 이를 다루는 그룹 규제요건을 판단하며, 적절한 대응을 위한 그룹단위감독 검토 및 보고 절차의 수립하고 이행하는 3단계 접근법으로 이루어짐(〈그림 Ⅲ-3〉참조).

○ IAIS는 또한 보험사업에 따르는 리스크 이외에 시스템, 부외거래, 유동성, 분산 및 집중, 위험 전이와 평판 등의 추가적 리스크를 고려할 것을 제시함.

〈그림 Ⅲ-3〉 IAIS 그룹감독체계의 감독 검토 및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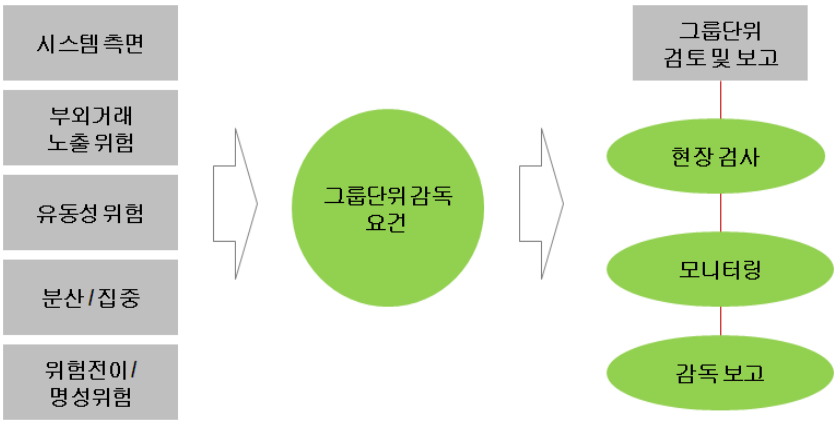

자료: IAIS, ICP 23, 〈그림 23.5〉.

나) 보험핵심원칙 제25장 감독 조정과 협력

■ IAIS는 그룹단위감독에 있어서 관련된 감독자 및 감독당국 사이의 비밀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과 조정 및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(ICP 25).

○ 협력 및 정보공유의 대상은 중앙은행, 정부부처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역의 감독자도 포함하여 개별 회사 및 그룹에 대한 포괄적 감독을 용이하도록 해야 함(ICP 25.1).

– 그룹감독을 위한 감독자 간의 협력과 조정 및 정보공유를 위해 감독협의체(supervisory college)의 구성 또는 관련 감독자 간 양해각서(MoU)[42]의 교환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음(ICP25.1.2).

– 그룹감독을 위한 조정은 감독협의체 외에도 다른 조정 메커니즘도 포

42) Memorandum of Understanding.

함하며, 이는 그룹의 특성, 규모 및 그룹과 리스크의 복잡성에 따라 정해짐(ICP25.1.4).

- 감독협의체 및 기타 협력 메커니즘은 그룹의 내재된 위험, 특성, 규모, 복잡성을 함께 고려하여 그룹의 법률적, 조직적 구조 및 그들의 활동을 감안하여 구성함(ICP25.1.6).

■ 감독자 간 양해각서(MoU)는 양자 간(두 권역) 또는 다자 간(세 권역 이상) 체결 형식을 가질 수 있으며 특정 그룹 및 관련 감독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환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(ICP25.1.7).

○ MoU는 감독자 간에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또는 비상 상황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그룹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체결함.

○ MoU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MoU 참여 감독자 및 감독기관 사이의 정보 교환내용에 대한 엄정한 보안유지가 중요함.

○ MoU를 통해 그룹단위 평가의 일부를 관련 감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전부를 지정된 그룹단위 감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.

■ 그룹감독에 있어서 관련 감독자 간 협력과 조정 방법 중 하나는 감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며, 구성원은 그룹에 속한 보험회사의 감독자와 필요한 경우, 다른 권역의 감독자도 포함할 수 있음(ICP25.1.9).

○ 정기적인 감독협의체 회의를 통해 관련 감독자들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다른 국가 및 금융권역의 감독자들과의 협력도 증진될 수 있음.

○ 감독협의체의 주된 목적은 그룹 전체에 관한 정보 공유나 감독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춤(ICP25.1.13).

- 그룹감독을 위한 감독자 간의 협력과 조정 및 정보공유를 위해 감독협의체의 구성 또는 관련 감독자 간 양해각서의 교환과 같은 다양한 방법

- 긴급상황 시 감독 협력과 조정의 과정, 그에 따른 계획 및 절차 협의
- 그룹의 개요 및 공식적인 운영구조 형성
- 그룹차원의 위험분석, 그룹 내 중요한 관계형성
- 그룹 전반에 걸쳐 시스템리스크로 확인된 부분들에 대한 토론
-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중복 감독은 피하고 공동감사 진행
- 그룹 및 감독협의체를 통한 정보 수집 동의
- 그룹감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감독협의체의 진행 여부 협의

2)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(ComFrame)

■ 금융위기 이후 여러 금융권역과 국가에 걸쳐있는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에 있어서 감독자들 사이의 조정, 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한 필요성에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.

○ 특히 감독자들 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감독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IAIS는 201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개발 작업에 착수함.

○ 2013년 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완성 뒤 영향평가를 거쳐 시행될 계획임.

■ 우리나라는 아직 공통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글로벌 보험그룹(IAIGs)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, 한국의 개방된 보험시장은 이미 많은 외국의 글로벌 보험그룹들의 활동무대이기도 함.

○ 한국 보험감독당국은 이미 진출국 감독자(host supervisor)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, 이런 측면에서 공통감독체계 논의는 한국의 보험그룹감독과도 관련이 있음.

○ 따라서 공통감독체계를 통한 규제요건 및 감독실무의 국제적인 수렴과 협력의 증진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감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〈그림 Ⅲ-4〉 공통감독체계(ComFrame) 개념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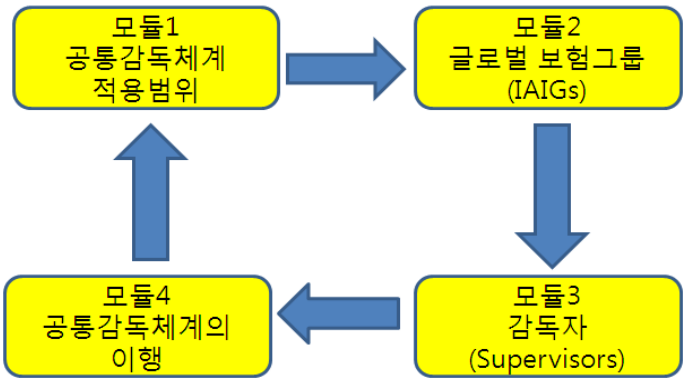

■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감독기준인 공통감독체계는 총 4개 모듈(modules)로 구성되며, 각 부분은 구성요소(elements)들로 구성됨.

○ 모듈1은 공통감독체계가 적용되는 그룹의 식별기준 및 감독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
○ 모듈2는 글로벌 보험그룹이 준수해야 할 규제요건들로 이는 향후 국가 및 지역 감독에 반영될 것임.

○ 모듈3은 감독절차(supervisory process)와 같은 감독자의 공통감독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요건들을 담고 있음.

○ 모듈4는 공통감독체계 이행에 필요한 국가단위의 사전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.

■ IAIS는 공통감독체계에서 국제적 영업활동과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보험그룹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하되 각국 감독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함(모듈1).

〈그림 Ⅲ-5〉 공통감독체계(ComFrame) 구조

자료: IAIS(2012. 7), The 2012 ComFrame Draft.

○ 보험그룹은 둘 이상의 계열회사 중 적어도 하나가 중요 보험회사이고 계열회사들이 ICP 23[43]에 정의된 보험그룹에 해당함.

○ "국제적으로 영업 중"이란 일정 개수(예: 3개) 이상 주재국의 자회사 및 지점을 통한 활동을 하고 일정비율(예: 10%) 이상 보험인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함.

○ 규모는 수입보험료 (예: $10억) 또는 자산 (예: $50억)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그룹이 글로벌 보험그룹에 해당할 수 있음.

– 수입보험료 기준은 주로 손해보험사에, 자산 기준은 주로 생명보험사에 해당되는 기준이 될 것임.

○ 공통감독체계의 적용대상 보험그룹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국가의 감독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.

43) ICP 23 그룹단위감독(Group-wide Supervision).

〈그림 Ⅲ-6〉 글로벌 보험그룹(IAIGs) 식별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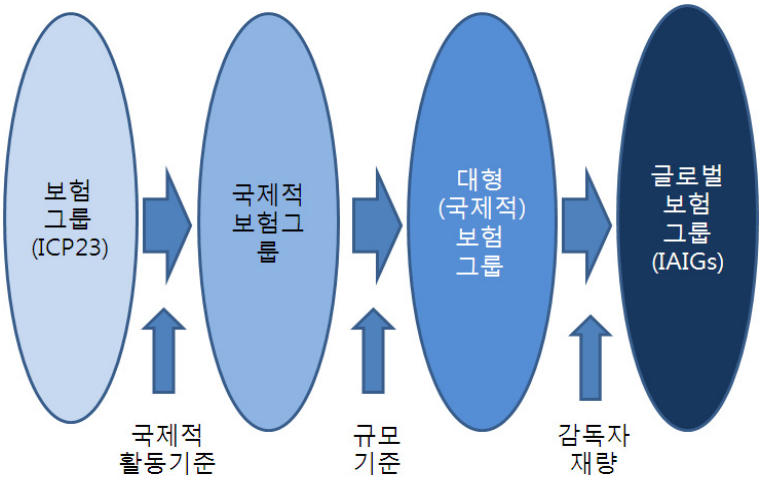

자료: IAIS(2012. 7), The 2012 ComFrame Draft M1E1 부록 1.

〈그림 Ⅲ-7〉 공통감독체계(ComFrame) 모듈2 및 모듈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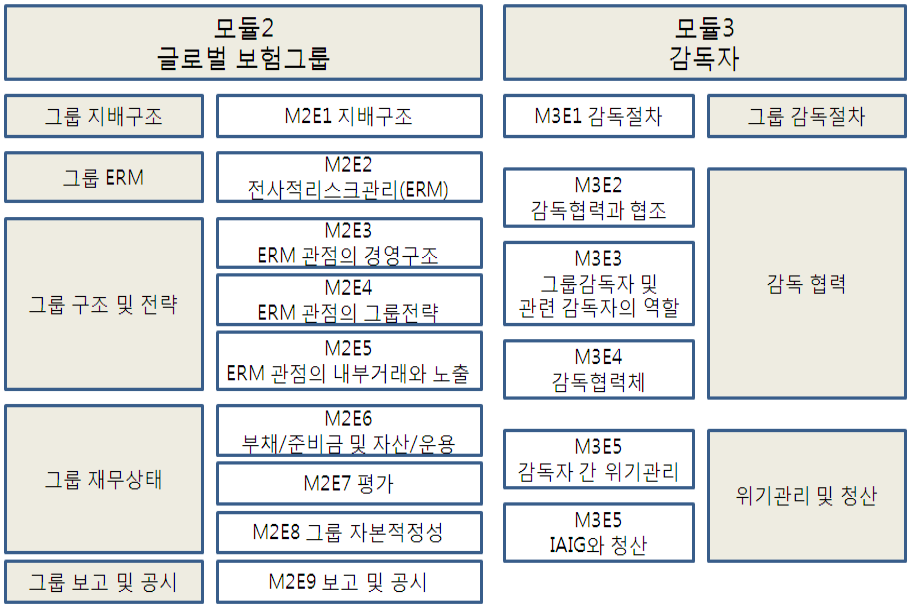

자료: IAIS(2012. 7), The 2012 ComFrame Draft.

■ 모듈2는 그룹 지배구조, 그룹 전사적리스크관리(ERM: Enterprise Risk Management), 그룹 구조 및 전략, 그룹 재무상태와 그룹 보고 및 공시의 5개 부문에 걸쳐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짐.

○ 그룹 지배구조에서는 글로벌 보험그룹이 그룹단위 지배구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건전한 경영과 영업 전반을 관장하여 계약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그룹 ERM에서는 글로벌 보험그룹이 그 특성, 규모와 복잡성에 따른 개별회사와 그룹단위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련된 주요 리스크를 제어하도록 그룹 ERM 체계를 갖추도록 함.

○ 그룹 구조 및 전략에서 그룹감독을 위해 감독자들이 ERM 관점에서 글로벌 보험그룹의 법적·경영적 조직구조를 인지하고 그룹의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, 주요한 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해해야 함을 강조함.

○ 그룹 재무상태에서는 글로벌 보험그룹의 ERM 측면에서 부채(준비금) 및 자산(운용) 등에 관한 그룹의 내부 정책, 부채 및 자산의 평가방법[44], 그룹단위 지급능력 평가[45]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
○ 마지막으로 그룹 보고 및 공시는 그룹감독을 위한 보험그룹과 관련한 정보의 보고 내용 및 범위와 시장규율을 촉진하기 위해 이 중 일부 정보를 공시하는 문제 등을 다룸.

■ 모듈3는 그룹단위 감독절차, 감독협력과 위기관리 및 청산의 3개 부문에 걸쳐 5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짐.

○ 그룹단위 감독절차는 관련 감독자의 그룹 관련 정보수집, 리스크 평가, 감독기획과 상시감시(off-site monitoring) 및 임점검사(on-site inspection) 등

44) IFRS(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rads)를 이용한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은 회계 관련 국제기구에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.

45) 공통감독체계 개발과 관련한 여러 논의 및 쟁점 중에서도 특히 자본적정성 부분은 국가 및 대륙 간 의견수렴이 쉽지 않은 부분이며 여전히 IAIS 내에서 토의가 진행 중에 있음.

일련의 감독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
- 그룹감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모듈 2의 그룹 지배구조, ERM, 조직 및 전략, 그리고 재무상태 관련 내용임.

○ 감독협력은 그룹단위 감독자와 관련 감독자들의 역할과 이들 사이의 협력, 조정, 정보공유의 범위와 비밀보호, 감독협력체의 구성과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
○ 위기관리 및 청산은 그룹단위 감독자가 감독협의체와 함께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상계획 및 대책과 글로벌 보험그룹 청산 시의 관련 감독자 간 국제적 협력을 다루고 있음.

■ 모듈4는 공통감독체계의 이행을 위한 IAIS 회원국들의 준비사항인 전제조건(Prerequisite)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
○ 전제조건은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 부여, 전문성, 조직절차 및 감독자원을 포함함.

2. EU의 보험그룹감독

가. EU의 금융그룹 감독지침

■ EU 금융복합그룹 지침에는[46] 보험회사가 금융 및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없음.

○ 금융지주회사의 타 회사 주식 소유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미국, 일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규제들은 존재하지 않음.

46) EU 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(2002).

■ EU는 보험지주회사의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적 규제를 위하여 '보험지주회사의 감독에 관한 지침'을 제시함.

○ 기존의 금융업권별 규제 이외에 보험그룹에 대해 추가로 규제함.

○ 특히 그룹감독의 초점은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급여력과 위험관리, 그룹 내 거래로 인한 내부 위험관리임.

– 그룹 내 거래는 대출, 보증, 부외거래, 투자, 재보험활동, 비용의 공동부담 등의 행위를 포함함.

– 요구자본의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그룹효과를 제거한 후의 필요자본 유지를 의미함.

○ 보험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각 회원국 간의 정보의 교환과 감독공조 등에 대한 규정을 강조함.

나. EU Solvency Ⅱ의 그룹감독

■ EU Solvency Ⅱ는 보험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보험그룹 전체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취급함.

○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자회사 여부를 판정함.

○ 연결재무제표에는 보험업 관련 서비스 제공 자회사도 포함함.

– 보험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란 자산의 소유 또는 관리, 데이터처리 서비스의 관리, 보험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에 부수하는 다른 비슷한 활동을 하는 회사를 의미함.

○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은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산출함.

■ EU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자기자본규제를 통해서 접근하며 특별히 자산운용규제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.

1) 가용자본과 자본의 질 평가

〈그림 Ⅲ-8〉 보험회사의 지급능력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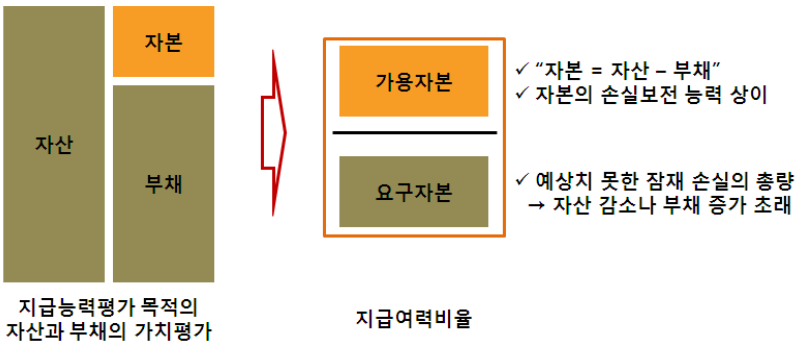

■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은 예상치 못한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손실의 총량(요구자본)에 상당하는 규모의 자본(가용자본)을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평가함.

○ 재무상태표(구 대차대조표)의 자산과 부채를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하여 계산된 지급여력이 가용자본에 해당됨.

○ 일반적으로 "가용자본 ≥ 요구자본" 또는 "지급여력비율(가용자본/요구자본) ≥ 100%"이면 보험회사가 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.

○ 국내에서는 위험기준자본(RBC: Risk-Based Capital)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요구자본에 해당됨.

■ 그러나 금융위기를 통하여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도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없는 자본이 있음을 보여줌.

○ 자본 계층화 논의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을 구분하여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자본을 늘리려는 데에서 출발함.

○ IAIS는 보험핵심원칙(ICPs)을 통해 자본이 보험사업을 지속하는 동안의

(going-concern basis)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고, 청산 시(winding-up) 계약자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함(ICP 17.2.6).

- 보험사업 지속에는 신규판매 없이 보유계약만 관리하는(run-off basis) 경우도 포함함.

○ IAIS는 각국 보험감독자에게 자본의 손실보전능력에 관한 기준 정립을 요구(ICP 17.11)

- 자본의 손실보전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자본의 후순위성, 가용성, 영구성, 사용처 제한이나 의무배당 여부 등을 평가척도로서 제시함(ICP 17.11.7).
- 가용성(대체성)과 양도성을 갖지 못한 자산은 그룹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가용자본에서 제외함.
- 대체성은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한정되지 않는 특성을, 양도성은 한 구성원에서 다른 구성원으로의 자산이동에 심각한 장애가 없어서 최대 9개월 이내에 그룹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함.

○ EU Solvency Ⅱ는 IAIS가 제시한 자본구성의 구체적인 규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.

■ EU Solvency Ⅱ는 재무상태표(구 대차대조표) 항목은 물론 신용장 등의 부외항목도 가용자본 범주에 포함하여 자본의 손실보전능력을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함.

○ EU Solvency Ⅱ는 자본의 후순위성, 가용성, 충분한 듀레이션(영구성), 상환요건 유무, 고정이자지급 유무, 사용처 제한 유무의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자본의 질을 결정함.

○ 자본의 질(quality)은 상(high), 중(medium), 하(low)로 분류함.

- 청산 시에만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(low quality)의 자본으로 분류함.
- 사업의 유지에 기여하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(medium

quality)의 자본으로 분류함.

–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 언제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(high quality)의 자본으로 분류함.

○ 부외항목의 경우 자본의 질이 우수하더라도 보완자본으로만 인정되며, 특별계정 등 특정 위험에 할당된 자본(ring-fenced funds)도 보완자본으로 분류함.

〈표 Ⅲ-2〉 EU Solvency Ⅱ와 Basel Ⅲ의 가용자본 구성

자본의 질	EU Solvency II		Basel III
	재무상태표(Basic)	부외항목(Ancillary)	
상(high)	기본자본(Tier 1)	보완자본(Tier 2)	보통주자본(CET), 기본자본(Tier 1), 보완자본(Tier 2)
중(medium)	보완자본(Tier 2)	보완자본(Tier 3)	
하(low)	보완자본(Tier 3)	-	

○ Basel Ⅲ 역시 자본의 질을 결정할 때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.

– 다만, Basel Ⅲ는 부외항목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자본 중에서도 보통주를 따로 구분하여(CET: Common Equity Tier) 보통주자본의 구성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Solvency Ⅱ와 차이가 있음.

■ EU Solvency Ⅱ의 자본계층화는 보험회사가 요구자본을 초과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의 질이 낮으면 감독당국은 지급능력이 낮다고 평가함.

○ 보험회사는 “기본자본 > 보완자본(Tier 2) > 보완자본(Tier 3)”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요구자본(SCR: Solvency Capital Requirement) 대비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(Tier 2, 3)의 구성비 요건을 충족해야 함.

○ 기본자본 구성비는 요구자본(SCR) 대비 50% 이상이어야 함.

○ 또한 보완자본 중에서 Tier 3의 구성비는 요구자본(SCR) 대비 15% 이하이어야 함.

〈그림 Ⅲ-9〉 EU Solvency Ⅱ의 요구자본에 대응하는 가용자본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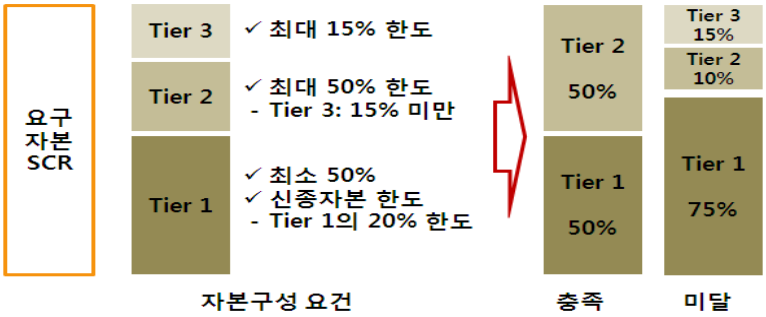

2) 요구자본

■ 보험그룹의 요구자본 산출은 보험회사군, 다른 금융자회사, 지분율이 낮은 보험회사의 세 개의 군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합산함.

○ 지주회사와 지분율로 통제가 가능한 보험회사군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간주하여 요구자본을 산출(SCR*),

○ 다른 금융자회사(CROFS)와 지분율은 낮지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회사의 요구자본(SCRNCP)을 별도로 산출함.

〈그림 Ⅲ-10〉 EU Solvency Ⅱ의 보험그룹 요구자본 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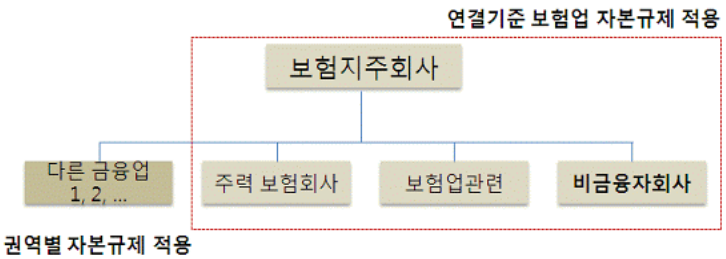

○ EU Solvency Ⅱ는 시장(SCR_{mkt}), 신용(SCR_{def}), 생명보험(SCR_{life}), 건강보험(SCR_{health}), 손해보험(SCR_{nl}) 등 각 리스크별로 구분하여 기초요구자본($BSCR$)을 산출함.

– 각 요소끼리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합산함으로써 그룹 내 분산효과를 반영함.

– 예를 들어,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진 경우, 각 자회사의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한 값보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하나로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값이 작음.

$$BSCR = \sqrt{\sum_{ij} Corr_{ij} \times SCR_i \times SCR_j}$$

■ 비보험자회사는 지분법을 통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며 이는 관련된 자본요구량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.

○ 지분투자위험과 집중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량 산출이 필요함.

3) EU Solvency Ⅱ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

■ 유럽보험감독국(EIOPA)는 보험그룹 167개를 포함한 총2,52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.

〈표 Ⅲ-3〉 EU Solvency Ⅱ 제5차 계량영향평가: 보험그룹의 규모별 분포

평가방식 및 규모	대형그룹	중형그룹	소형그룹	계
EU S Ⅰ* (현행 표준)	17	22	112	151
EU S Ⅱ**(표준모형)	17	23	126	166
EU S Ⅱ (내부모형)	9	6	14	29
평가대상 그룹 수(비율)	17(10.2%)	23(13.8%)	127(76.0%)	167(100.0%)

주: S Ⅰ*: Solvency Ⅰ, S Ⅱ** : Solvency Ⅱ

○ 보험그룹의 규모는 EU Solvency Ⅱ가 적용되는 전체 보험회사의 68.5%에 해당하며, 보험료나 준비금 규모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함.

– 생명, 손해, 재보험, 캡티브, 생·손보 겸영 회사들로 구성되며, 소형사 60.0%, 중형사 31.4%, 대형사가 8.9%를 차지함.[47]

○ 167개 보험그룹은 소형 76.0%, 중형 13.8%, 대형 10.2%로 구성됨.[48]

–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의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EU Solvency Ⅱ의 결과를 기존 방식인 EU Solvency Ⅰ의 결과와 비교함.[49]

가) 지급여력비율 하락: 요구자본의 증가

■ 제5차 계량영향평가에서 요구자본 증가로 잉여자본[50]이 축소되고 지급여력비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다양한 위험을 반영한 요구자본 산출과 가용자본 요건의 강화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고 잉여자본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남.

– EU Solvency Ⅰ은 책임준비금, 위험보험료, 보유보험료 등에 일정률의 위험계수를 곱하여 요구자본량을 산출한 반면, EU Solvency Ⅱ는 시장, 신용, 운영, 생명보험, 건강보험, 손해보험 등의 다양한 위험을 반영함.

– EU Solvency Ⅰ은 가용자본의 손실흡수성 등 리스크 정도를 구분하지 않으나, EU Solvency Ⅱ는 위험에 따른 재무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만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함.

○ 한편, 연결재무제표의 적용과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도 보험그룹의 잉여자

---

47) 손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10억/1억 유로(약 1.5조 원/0.15조 원)를 기준으로 대/중/소형사를 구분하고, 생명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100억 및 10억 유로(약 15조 원 및 1.5조 원)를 기준으로 대/중/소형사로 구분함.

48) 보험그룹의 경우 자산 900억/300억 유로(약 140조 원/47조 원)를 기준으로 대/중/소형사로 구분함.

49) EU Solvency Ⅱ 표준모형의 경우 연결재무재표기준 이외의 방식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함.

50) 잉여자본 = 가용자본 - 요구자본

본 축소를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남.

– 연결재무제표 적용으로 그룹의 가용자본이 크게 감소함.

■ 보험그룹의 잉여자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EU Solvency Ⅱ의 표준모형을 적용한 경우 EU Solvency Ⅰ에 비해 감소한 반면, 내부모형에서는 그룹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.

○ 보험그룹의 잉여자본은 EU Solvency Ⅰ의 2,000억 유로에서 EU Solvency Ⅱ에서 1,140억 유로 수준으로 하락하여 860억 유로가 감소함.

○ 한편, 내부모형에서는 잉여자본이 EU Solvency Ⅰ에 비해 증가한 경우도 발생함.

– 내부모형 적용에 따른 요구자본의 감소 때문으로 추정됨.

〈그림 Ⅲ-11〉 보험그룹의 잉여자본 변동

(단위: 억 유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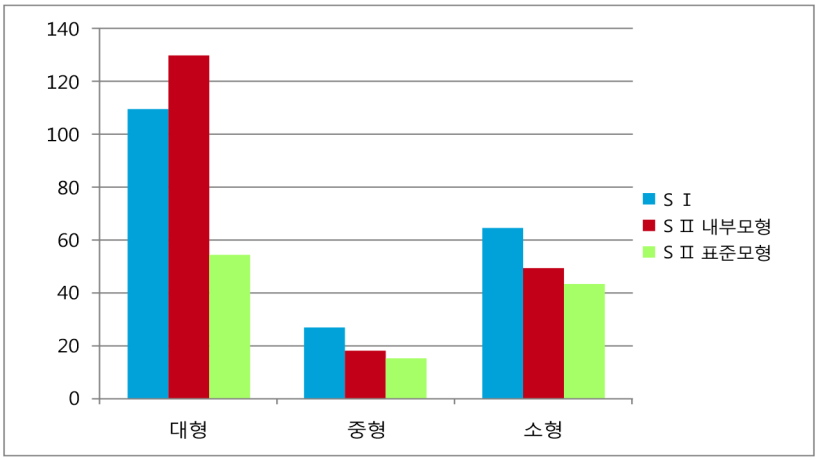

– 중소형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잉여자본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.

나) 분산효과: 그룹의 요구자본 감소

■ 보험그룹의 요구자본은 단순 합산한 요구자본 대비 80% 수준이나, 내부거래를 제거할 경우 단순 합산한 요구자본 대비 87% 수준을 보임.

○ EU Solvency Ⅱ에서 보험그룹의 요구자본은 개별 자회사에 대해 산출된 요구자본을 합산할 때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, 이는 여러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나타난 분산효과 때문임.

○ 보험그룹에 대한 EU Solvency Ⅱ 표준모형의 그룹 요구자본과 개별 자회사의 요구자본(SCRi)의 합산치 비교($1-SCR_{group}/\sum SCR_i$)는 평균 20%의 그룹 분산효과로 나타남.[51)]

– 그룹 규모가 클수록 요구자본이 감소하는 폭도 더 큰 것으로 관찰됨.[52)]

○ 한편,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제 분산효과는 13% 수준으로 나타남.

– 개별 자회사의 요구자본 합산치와 내부거래 부분을 조정한 요구자본(SCR_i^{adj})을 합산한 값의 비교($1-\sum SCR_i^{adj}/\sum SCR_i$)는 9% 수준이고, 내부거래 제거 분산효과($1-SCR_{group}/\sum SCR_i^{adj}$)는 13% 수준임.

〈그림 Ⅲ-12〉 보험그룹의 위험별 분산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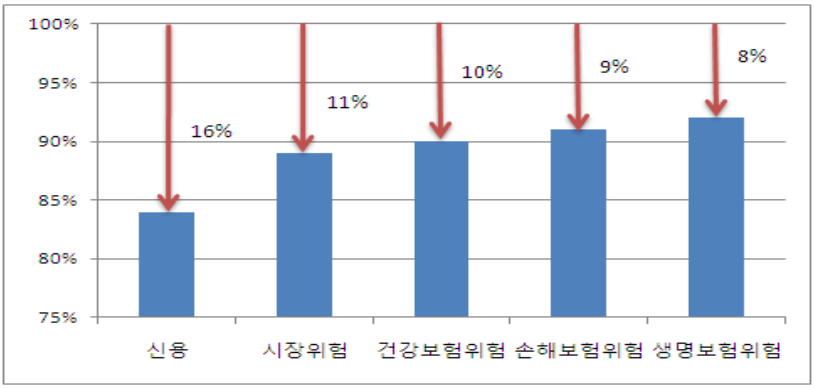

51) 표준편차가 18%에 달하여 개별 기업별 실제 분산효과 정도는 크게 차이가 있음.
52) 대형그룹 21%, 중형그룹 16% 수준이었으나 소형그룹은 5% 미만임.

■ EU 보험그룹의 분산효과는 신용위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.

○ 분산효과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, 보험위험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.

– 시장위험의 분산효과는 금리위험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.

○ 분산효과 예시는 그룹 내 자회사들의 요구자본 단순 합이 600인 반면, 분산효과를 고려한 지주회사 전체의 보험위험 요구자본은 412.3으로 경감됨을 보여줌(〈그림 Ⅲ-13〉 참조).

■ 보험그룹에 대한 5차 계량영향평가를 요약하면, 보험그룹의 지급여력비율은 EU Solvency Ⅰ 대비 하락했으나, 그룹 전체 요구자본은 개별 자회사 요구자본의 단순 합산치보다 감소함.

〈그림 Ⅲ-13〉 분산효과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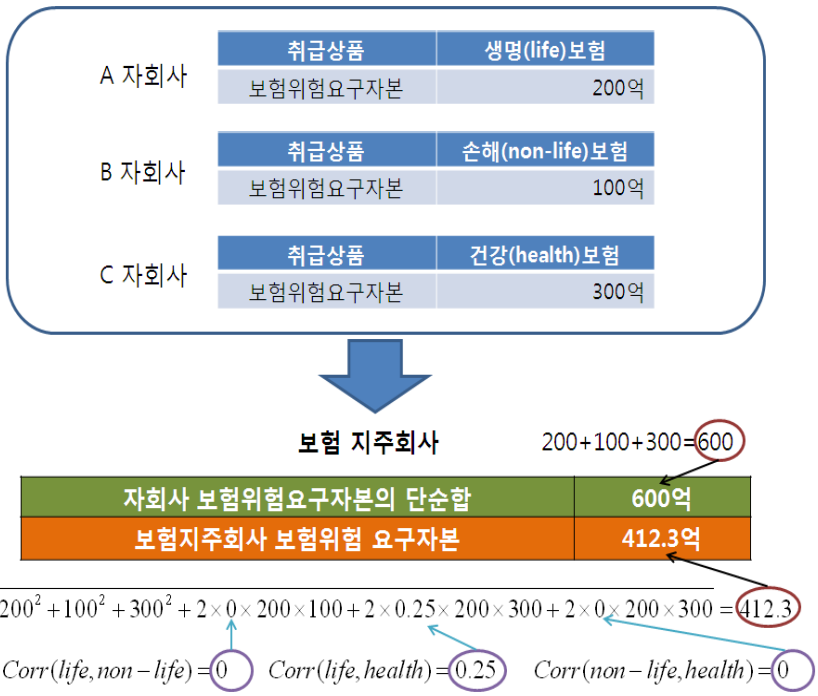

○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적용으로 그룹의 가용자본이 하락하고 요구자본은 EU Solvency Ⅰ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임.

○ 그러나 보험자회사의 요구자본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산출됨으로써 요구자본의 경감효과가 나타남.

○ 또한 내부모형을 적용할 경우 보험그룹의 요구자본 수준이 표준모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아 요구자본 경감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한편, 보험그룹의 규모가 클수록 요구자본 경감효과도 커지는 현상은 EU Solvency Ⅱ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모두에서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음.

3. 미국의 보험그룹 감독

가.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주별 감독

■ 1999년 미국은 은행업의 다른 금융업 겸영을 허용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(Gramm-Leach-Bliley Act)을 마련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함.

○ 이때,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은행을 포함해야 함.

○ 은행을 포함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인 경우는 보험지주회사라고 하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.

■ 보험의 경우 연방이 아닌 각 주별로 감독하며,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(NAIC: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)에서 모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각 주에서 채택하는 형태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통적인 보험감독체계를 유지함.

○ NAIC는 1969년 보험지주회사 모델법(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ion Act)을 제정한 이래 이를 각주에 권고하여 그룹감독의 틀을 형성함.

– 자본요건에 대해서는 모·자회사 그룹이 아닌 지주회사의 경우 그룹

자본요건이 없고 개별 자본요건 산출 시 그룹 영향을 고려하여 요구자본 수준을 조정하는 정도에 그침.

– 따라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음.

○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은 공통적으로 지주회사가 보험회사의 자산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전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.

■ 보험지주회사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주회사의 범위를 제시함.

○ 보험지주회사법은 보험회사 자체는 물론이고 보험회사와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모두 규제함.

– 경영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, 중요거래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함.

나.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작업(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)

■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혁 작업(이하 SMI)을 추진함(NAIC 2008).

○ NAIC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체계를 재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, 보험감독 및 은행감독, 회계 부문의 국제적 논의를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에 반영하기 위한 SMI 로드맵을 마련함.

○ 시스템위험에 대해서는 Dodd-Frank Act(2010)를 통해 재무부에 연방보험국(Federal Insurance Office)을 설치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함으로써 주 단위 보험감독체계를 보완함(조용운 2010).

■ 미국의 개혁 작업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함.

○ NAIC는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,

그룹감독,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및 재무보고, 재보험 등의 의제를 설정함.

■ 미국의 개혁 작업은 EU Solvency Ⅱ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다는 점이 특징임.

○ NAIC는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, 그룹감독,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및 재무보고, 재보험 등의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작업반을 운영함.

■ NAIC는 2013년 말까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틀과 핵심원칙을 정비하고 기존 그룹감독 체계 재편을 완료할 예정임.

○ NAIC는 IAIS의 보험핵심원칙을 반영하여 7개 조항으로 구성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원칙을 제시함.

〈표 Ⅲ-4〉 미국의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의 의제

주요 의제	세부 의제
자기자본규제	자본적정성
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	기업지배구조 그룹지급능력
그룹감독	그룹지급능력
감독회계 및 재무회계	국제적인 지급능력평가 및 회계기준 원칙중심 준비금 적립
재보험	재보험

자료: NAIC(2012).

○ EU Solvency Ⅱ 사례를 통해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감독보고(ORSA: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), 자본계층화, 내부모형,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, 그룹감독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반영함.

다. SMI 성과와 그룹감독

■ NAIC는 지급능력평가와 상시감독의 개선방향을 규제보다는 감독에 초점을 두고 접근함.

○ RBC 표준모형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지속하되, 우선 리스크분산 방법론과 보험회계 및 재보험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주력함.

○ RBC는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적기감독조치에 필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RBC 내부모형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수용함.

■ NAIC는 상시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감독목적의 전사적 위험관리(ORSA: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)를 의무적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 중임.

○ NAIC는 2011년 ORSA 매뉴얼을 제시하고, 보험회사가 ORSA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델법을 2012년 채택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함.

■ NAIC는 2010년 보험지주회사 모델법규를 개정하고 투명성 확보와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“Windows and Walls” 개념을 도입하여 감독협의체 구성과 모니터링 수단 강화에 주력함.

〈표 Ⅲ-5〉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혁 방향

주요 의제	개혁 방향
자본규제	• 시나리오 및 추세 분석 • 대재해 등 리스크 추가 반영
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	• 기업지배구조 요강 채택 • ORSA 지침(Guidance Manual) 채택
그룹감독	• 지주회사모델법규(#440, #450) 개정 • 감독협의체 구성 및 이행 문서화
감독 및 재무 회계	• 표준책임준비금모델법(#820) 채택; 가치평가지침(VM20) • 원칙중심 준비금 적립에 대한 현장영향평가 실시
재보험	• 재보험인정모델법규(#785, #786) 채택

자료: NAIC(2012).

○ 현행 그룹감독에서는 보험지주회사 모델법규[53]와 NAIC 재무 분석 매뉴얼이 적용되고 있음.

○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NAIC는 그룹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한 창(clearer windows)과 그룹 내 위험 전이를 방지할 벽(walls)을 강화한다는 "Windows and Walls" 개념을 도입하였음.

– 감독자들 간 의사소통 강화와 감독협의체 구성, 감독자의 정보 접근/집적, 이행강제권 강화, 그룹의 자본평가에 주력함.

○ 특히, 자회사 성과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재정비하였음.

– 전사리스크보고서(Form F)를 통해 보험그룹 내에서 보험회사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회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자에게 부여함.

4. 일본의 보험그룹 감독

■ 일본의 보험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 형태이며 일반사업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음.

○ 1997년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

○ 단, 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을 적용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는 없음.

■ 일본의 보험그룹 감독은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.

○ 1998년 연결 기준 공시제도 정비

53)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(Model#440) and Model Regulation (Model#450)

○ 2008년 이해상충 관리체제 구축

– 보험그룹의 적정한 정보관리 및 적절한 내부관리 체제의 정비를 실시

○ 2010년 연결 재무 건전성 기준 도입

– 2012년 3월부터 적용 예정

■ 연결 재무건전성 기준 도입으로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보험그룹 전체를 하나로 연결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함.

○ 금융 위기의 교훈으로서 그룹 내 업체의 경영 악화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10년 5월에 도입하여 2012년 3월부터 적용함.

– 2012년 3월 말 이전에는 개별보험회사 각각에 대해 건전성을 규제함.

〈표 Ⅲ-6〉 일본의 보험회사 그룹경영에 관한 최근 주요 제도 개정

연도	개정 내용
1995	• 생명보험의 손해보험 자회사, 손해보험의 생명보험 자회사 보유 허용 • 보험회사에 의한 다른 보험회사 보험 산업의 업무 대리 등의 허용
1997	• 보험 지주 회사의 허용
1998	• 보험회사와 은행 · 증권 간의 자회사 방식에 의한 참가 허용 • 연결 기준 공시 제도 정비
2001	• 자회사의 종속 업무와 금융 업무 겸영의 허용
2003	• 자금 대출 등 다른 금융업을 행하는 업무 대리 등 허용
2004	• 보험 회사의 증권 중개 업무의 허용 • 신탁 전문 회사의 자회사 허용
2005	• 보험회사 본체의 은행 대리업의 허용
2008	• 보험회사 본체의 배출권 거래의 허용 •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이슬람 금융 허용 • 이해상충 관리체제 구축
2010	• 연결 재무 건전성 기준 도입
2011	• 보험 회사 본체의 금융리스 거래 허용 • 그룹의 다른 보험회사 등 금융 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

○ 적용 대상은 보험지주회사 및 보험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모든 보험그룹
  – 그러나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계산은 제외하고, 소액 단기 보험 대리점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에 대한 규제 도입은 당분간 보류함.
○ 연결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범위는 회계 처리에 준하나, 금융 자회사(은행, 증권 등의 자회사)는 항상 지급여력비율 계산에 포함함.
○ 지급여력의 계산은 연결 재무제표의 순자산을 바탕으로 하나의 회사에 대한 지급여력 계산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함.
  – 영업권 등은 순자산에서 공제함(은행 규제와 형평을 맞춤).
  – 해외 보험 자회사 등 각종 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규제에서 산입이 인정되는 경우에 산입함.
○ 해외 보험 자회사 등의 요구자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별 회사의 요구자본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.
  – 그러나 보험위험, 최저보증리스크 및 자산운용위험은 연결 지급여력비율 고유의 위험 계산 방법으로, 간편법 및 해외규제에 따른 위험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도입함.
○ 다른 업종(은행 또는 증권 회사 등)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자회사는 당해 건전성 규제의 요구자본의 사용을 허용함.

■ 또한, 보험지주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음.
○ 보험지주회사 그룹에서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가 없으나, 개별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적용함.
  –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 및 동일인 자신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총자산의 10%,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6% 임.
○ 보험회사는 특정관계자 및 이들 특정관계자의 고객 사이에 부당한 거래 및 행위를 금지함.
  – 특정관계자란 당해 보험회사의 자회사,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, 당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,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.